

제주지방법원 2021. 11. 15 선고 2021가단1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11. L

12. M

변 론 종 결 2021. 10. 18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N 대 166㎡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‘상속지분’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

관하여 1990. 1. 27.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, C, D, F, G, H, L, M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 본문 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E, I, J, K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최석문

